

◆ 23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론서 정오표

-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

Page 28. 2번째 표

오류. 수정 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<★기능장>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합계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 (유별·품명의 제한 없음)	

오류. 수정 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<★기능장>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합계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	

Page 50. 1번째 표

오류. 수정 전

③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■ (2류 + 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) → 3류 제12호
④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,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■ (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+ 4류) → 3류 제12호

오류. 수정 후

③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■ (2류 + 3류) → 3류 제12호
④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,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■ (3류 + 4류) → 3류 제12호

Page 505. 3번째 줄

오류. 수정 전

(= ②유형은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)

오류. 수정 후

(= ①②유형은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)

◆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		
구분	행정처분 : 취소, 사용·업무정지 (♣규칙 [별표 2])	과태료 부과처분 (♣영 [별표 9])
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간 ■ 같은 위반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1년간 ■ 같은 위반행위
기간의 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
횟수에 따라 가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음 차수 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음 차수 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
감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용정지·업무정지인 경우 ↳ 감경 : 2분의 1 범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상공인 아닌 경우 ↳ 감경 : 2분의 1까지 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 ↳ 감경 제외 : 체납자
	<p><★개정. 시행 '23. 1. 5.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정취소·등록취소인 경우 ↳ 감경 : 6개월의 업무정지 ↳ 감경 불가 : 취소 사유의 1. 2. 3호 (=처분 1차의 취소 사유인 경우) 	<p><★개정. 시행 '23. 4. 25.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상공인 경우 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해당자) ↳ 감경 : 100분의 70 범위 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 ↳ 감경 제외 : 체납자

◆ 시행령 [별표 9] :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	
1. 일반기준	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	
<나목 신설 2023. 4. 25>	
나.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	
<기존 나목 → 다목 개정>	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	
<기존 다목 → 라목 개정>	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	

◆ **주유취급소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** (개정·시행 2023. 6. 29.)

● 입법예고와 조금 다르게 개정

(입법예고 의견수렴의 의미의 내용을 신뢰하지 말고, 개정된 정확한 법문을 확인할 것)

◆ 주유취급소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(개정·시행 2023. 6. 29.)	
개정 전	개정 후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2)</p> <p>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V.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2)</p> <p>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V.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(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외의 장소에 둘 것</p>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4가) 단서</p> <p>●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. 다만,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4가) 단서</p> <p>●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. 다만,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</p>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5가) 및 나)</p> <p>● 충전기와 인터페이스[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플러(coupler), 인렛(inlet), 케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) 충전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. 다만,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 주변에 설치하고,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나)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5가) 및 나)</p> <p>● 충전기와 인터페이스[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넥터(connector), 케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) 충전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. 다만,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(1) 충전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 주변에 설치할 것</p> <p>(2) 충전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</p> <p>나)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

Page 570. 2번째 표 / 규칙 개정. 시행 '23. 6. 29.

<p>◆ 충전공지 [=충전기기(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)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]</p>
<p>● 자동차용 충전설비를 건축물 『밖에』 설치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충전공지 :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 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한다. ☞ 공지 너비 및 길이의 규정이 없음 →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범위를 표시 ■ 충전공지의 설치 장소 ☞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둘 것 (=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외의 장소에 둘 것)
<p>● 자동차용 충전설비를 건축물 『안에』 설치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 ■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 :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

Page 582. 10-2. ③ / 규칙 개정. 시행 '23. 6. 29.

개정. 수정 후

③ 충전공지의 설치 장소

- ① **폭발위험장소**(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**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의 범위**를 말한다.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에서 같다) **외의 장소**에 둘 것

Page 582. 10-4. ② / 규칙 개정. 시행 '23. 6. 29.

개정. 수정 후

- ② 다만, 분전반을 **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**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**방폭성능**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Page 583. 10-5. / 규칙 개정. 시행 '23. 6. 29.

개정. 수정 후

10-5.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[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**커넥터(connector)**, 케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

- ② 다만,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**방폭성능**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- ① 충전기기의 **전원공급**을 **긴급히 차단**할 수 있는 장치를 **사무소 내부** 또는 **충전기기 주변**에 설치할 것
 - ② 충전기기를 **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**에 설치할 것
 - ③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**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**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

Page 583. 10-5. 표 삭제